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2019년 12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동물복지정책팀 팀장 김동현(044-201-2371), 사무관 김철기(2374) / 제공일: 12월 27일(총 8매)		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·예외 허용하는
 「동물보호법」 시행(2020.3.21.)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안 시행(2020.3.21.)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

○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 개정안 **입법예고**(2019.12.30. ~ 2020.2.10., 42일간)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미성년자*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안**이 **2020.3.21. 시행예정**임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

* 19세 미만의 사람 ** 붙임1 참조

○ 동물실험시행기관*에 설치되어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**(이하 '윤리위')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 개정안을 2019.12.30.부터 2020.2.10.까지(42일간) **입법예고** 한다.

*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국가, 지자체, 의료기관, 대학교 등)

**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며,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을 심의·감독하는 위원회

○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2020.3.21.에 공포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·예외 허용하는 내용의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안(2018.3.20. 공포)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규정 외에도

-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는 윤리위의 동물실험 심의에 의사 참여 의무화,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의 심의를 보좌하는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<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>

① 「동물보호법」 제24조의2*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한 **과태료 세부기준 마련**

*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안됨(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)

○ 2020.3.21.부터 시행예정인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,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였다.

-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, 1차 위반 시 30만원, 2차 위반 시 50만원,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.

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**운영 기준 강화**

① 현재 윤리위를 구성할 때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사*가 **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**되어 있으나,

* 「동물보호법」 제2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로서, ①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, ②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, ③대학에서 동물실험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말함

- 해당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을 실제 심의하는 회의에는 **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심의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.**

- 이에,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동물실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윤리위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.

② **동물실험 심의의 지속적 증가*로 윤리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,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하였다.**

* (동물실험 심의건수) ('16) 25,053건 → ('17) 28,506 → ('18) 33,825
(위원회 운영기관 당 심의건수) ('16) 75.9건 → ('17) 80.7 → ('18) 95.0

-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안전 사전검토, 심의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**행정 전문인력 채용의무를 규정**하여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'국제기구' 추가

○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「동물보호법」 상 의무*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.

* 윤리위 설치의무, 동물실험 시작 전 윤리위의 심의를 받을 의무 등

□ **농식품부 관계자는**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,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등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, 이번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참고로,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(안)에 대한 **입법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**(<http://www.mafra.go.kr>), **국민참여입법센터**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해 **확인이 가능하며,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**(ckkim2611@korea.kr), **우편**((우301110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5동,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) 또는 **팩스**(044-863-9025)를 통해 **의견 제출이 가능하다.**

<p>③ ~ ⑤ (생략) <신설></p>	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</p>
<p>⑥·⑦ (생략)</p>	<p>⑦·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</p>

붙임3 **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개요**

- (추진개요) '08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(이하 윤리위) 제도 최초 시행(의무사항)
 - ※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「실험동물법」(‘09년 제정)상 설치하여야 하며, 실험동물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윤리위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(동물보호법 제25조)
 - (배경)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하여 설치
 -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실험의 억제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강화하기 위함
- (설치대상) 동물실험시행기관(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)
 - 국가, 지자체, 기초연구, 식품, 의료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* 등
 - * 「실험동물법」은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, 마약 등의 개발, 안전관리 등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(교육목적, 복제목적 등은 해당되지 않음)
- (위원구성)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, 수의사·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1인은 반드시 포함, 위원의 3분의 1은 해당 동물 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등을 준수해야 함
- (심의절차) 윤리위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이해관계 없는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해야 함
- (지도·감독) 윤리위 구성·운영에 대해 지도·감독, 개선명령 가능
 - 지도·감독 권한은 검역본부장에게 위임(동물보호법 제44조, 시행령 제16조)
- (과태료·벌칙)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, 제47조 규정
 - ① (300만원 이하의 과태료) 윤리위 설치·운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, 윤리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,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② (300만원 이하의 벌금) 사역건을 대상으로 한 실험 중 윤리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실험